

#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068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이병도, 김규남, 김성준,  
김영철, 김용일, 김인제,  
김춘곤, 남창진, 민병주,  
박강산, 박승진, 박영한,  
봉양순, 서상열, 신복자,  
유정인, 이영실, 이원형,  
이종태, 임규호, 임종국,  
정준호, 허 훈, 홍국표,  
황철규 의원(25명)

## 1. 제안이유

-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명시함(안 제 9조 신설).

##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)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12조(종전의 제11조)제1항 중 “사무”를 “사무 및 제9조의 운영사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제9조</u>·<u>제10조</u> (생략)</p> <p><u>제11조</u>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<u>사무</u>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제9조</u>(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)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<u>제10조</u>·<u>제11조</u> 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</p> <p><u>제12조</u>(사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 <u>사무 및 제9조의 운영사항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